

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

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16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9. 11. .

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□ 제안이유

- 가. 「지방공기업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임원임면에 관한 사항 등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,
- 나. 택지개발사업, 주택건설사업, 도시재생사업, 아시안게임지원사업 등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개발공사의 수권자본금을 증액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가. 공사의 수권자본금을 2조 5천억원에서 5조원으로 증액함(안 제5조제1항)
- 나. 사장, 감사, 이사 임명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도록 하고,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도록 개정(안 제8조제2항, 안 제10조제1항, 안 제11조제2항, 안 제12조제1항)
- 다. 상임이사는 사장이,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도록 하고, 상임이사 정수 관련 문구를 법 규정에 맞게 개정(안 제11조)
- 라.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삭제(안 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)
- 마.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일부 문구 수정

□ 참고자료

- 가.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.

인천광역시도시기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도시기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공기업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”를 “「지방공기업법」”으로 하고, “인천광역시도시기개발공사(이하 “공사”라 한다)”를 “인천광역시도시기개발공사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공사”를 “인천광역시도시기개발공사(이하 “공사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2조 5천억원”을 “5조원”으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임기는 3년으로 한다”를 “임기는 3년으로 하며,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9조제5호 중 “이 법”을 “「지방공기업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인천광역시공사·공단사장추천위원회”를 “영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”로 한다.

제1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포함하고,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2분의 1미만으로 한다”

를 “포함한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.

② 이사(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)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,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임면한다”를 “임면하며,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. 다만, 당연직 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”로 한다.

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29조 제목 중 “계리”를 “회계처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“계리”를 “회계처리”로 한다.

제42조 중 “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”을 “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제14호, 제7조제2항, 제21조제1항제11호 및 제13호, 제27조제1항제3호, 제39조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고, 제22조제1항, 제27조제3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하며, 제9조, 제13조 중 “각 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조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공기업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<u>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</u>(이하 “공사”라 한다)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공기업법」 ----- ----- <u>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</u>----- ----- -----</p>
<p>제2조(경영의 기본원칙) <u>공사</u>는 항상 공사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.</p>	<p>제2조(경영의 기본원칙) <u>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</u>(이하 “공사”라 한다) -----</p>
<p>제5조(자본금) ①공사의 수권자본금은 <u>2조 5천억원</u>으로 하고 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.</p>	<p>제5조(자본금) ①----- ----- <u>5조원</u> ----- ----- -----</p>
<p>② (생략)</p>	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조(정관)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13. (생략)</p> <p>14. <u>기타</u> 필요한 사항</p>	<p>제6조(정관) ①----- ----- 1. ~ 13. (현행과 같음) 14. <u>그 밖에</u> ----- 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② (생략)</p>	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7조(등기) ① (생략)</p> <p>②공사의 설립등기와 <u>기타</u>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지방공기업법 시행령」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이 규정한 바에 따른다.</p>	<p>제7조(등기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 <u>그 밖에</u>----- -----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제8조(임원) ① (생략) ② <u>사장,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 다만,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.</u></p> <p>제9조(임원의 결격사유) <u>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</u> 1. ~ 4. (생략) 5. <u>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</u></p> <p>제10조(사장) ① <u>사장은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면하되,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인천광역시공사·공단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한다.</u> ② ~ ④ (생략)</p> <p>제11조(이사) ① <u>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 이사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</u> 1. <u>상임이사의 정수는 사장을 포함한 4인 이내로 한다.</u> 2. <u>비상임 이사의 정수는 시의 실·국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, 도시계획·주택건설분야 전문가를 포함하고,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2분의 1미만으로 한다.</u></p>	<p>8조(임원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<u>임기는 3년으로 하며,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.</u> -----</p> <p>제9조(임원의 결격사유)-----<u>각 호의 어느 하나</u> ----- -----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「지방공기업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-----</p> <p>제10조(사장) ①----- ----- ----- ----- <u>영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</u>----- -----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1조(이사) ① ----- ----- ----- 1. <u>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.</u> 2. ----- ----- ----- <u>포함한다.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②이사는 <u>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한다. 다만, 정관에서 규정한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u></p> <p>③ (생략)</p> <p>제12조(감사) ①감사는 <u>시장이 임면한다.</u>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13조(임기만료 임원에 의한 직무대행)시장은 다음 <u>각 호의 1</u>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제16조(이사회) ① ~ ②(생략)</p> <p>③<u>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. 다만, 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지정하는 비상임 당연직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</u></p>	<p>②이사(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)는 <u>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,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한다.</u>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2조(감사) ①-----<u>임면하며,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. 다만 당연직 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3조(임기만료 임원에 의한 직무대행)-----<u>각 호의 어느 하나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6조(이사회)① ~ ②(현행과 같음) <u><삭제>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</p> <p>⑤ 이사회 회의에 출석하는 비상임 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⑥ (생략)</p> <p>제21조(사업) ① 공사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 1.~ 10. (생략) 11.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2. (생략) 13. 기타 법 제2조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 등</p> <p>제22조(대행사업의 비용부담) ① 공사는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위탁계약에 의한다.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 <p>제27조(경비의 부담) ① 법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과 같다.</p>	<p><삭제></p> <p><삭제></p> <p>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1조(사업) ①----- ----- ----- 1.~ 10. (현행과 같음) 11.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 12. (현행과 같음) 13.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제22조(대행사업의 비용부담) ①----- ----- <u>그 밖의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7조(경비의 부담) ①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1.~ 2. (생략) 3. <u>기타</u> 성질상 공사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경비</p> <p>② (생략) ③ <u>기타</u> 사업자의 대행사업 경비의 부담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.</p>	<p>1.~ 2. (현행과 같음) 3.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그 밖의</u> ----- ----- -----</p>
<p>제29조(계리의 원칙) ① 공사의 회계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<u>계리</u>한다.</p> <p>②공사는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<u>계리</u>할 수 있으며,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회계규정으로 정한다.</p>	<p>제29조(회계처리의 원칙) ①----- ----- ----- ----- -----회계처리-----</p> <p>②----- ---회계처리----- -----</p>
<p>제39조(감독)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 4. <u>기타</u>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p>	<p>제39조(감독)----- ----- -----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<u>그 밖에</u>----- -----</p>
<p>제42조(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·관리)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「<u>지방공무원임용령</u>」에 의하여 실·과·소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.</p>	<p>제42조(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·관리) ----- ----- 「<u>지방공무원 임용령</u>」----- ----- -----</p>

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<p><input type="checkbox"/> 「지방공기업법」</p> <p>제58조 (임원의 임면 등 <개정 2006.10.4>)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사장과 감사(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감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)를 임명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(이하 "임원추천위원회"라 한다)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. 다만, 제4항에 따라 사장을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<개정 2009.4.1></p> <p>⑥ 이사(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)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,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한다. 이 경우 이사의 임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09.4.1></p> <p>제59조 (임기 및 직무) ② 공사의 사장·이사 및 감사는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. <신설 2009.4.1></p> <p>제62조 (이사회) ①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.</p> <p>②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.</p> <p>③이사회는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「지방공기업법시행령」</p> <p>제55조 (이사)①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.</p> <p>②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.</p> <p>제56조의3 (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<개정 2009.9.21>)</p> <p>①법 제58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(이하 "추천위원회"라 한다)는 공사에 두며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. 다만, 공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4인과 그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⑨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. <신설 2009.9.21></p>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사항 없음”
관련자료	“해당사항 없음”